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등 〉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24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검토의견	3
-----------------	---

1. ‘무급가족종사자’ 정의 신설	3
2. 예술인·노무제공자 기준보수 적용 대상 확대	5
3. 근로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에 따른 보험료 산정기준 마련 ..	8
4. 재충전급여 지급 기간 동안 보험료 미적용	10
5. 농림어업에 대하여 개산보험료 규정 적용	11
6. 보수총액 등의 신고대상 확대	14
7.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추가 등	16
8.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유형 확인 청구 시 연체금 징수 제외	20
9.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23
10.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등	27
11.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부과 등 관련 사항 신설 ..	31
12. ‘중소기업 사업주’를 ‘사업주’로 명칭 변경	36
13.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및 보험료 부과방식 변경	40
14.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 특례 신설	45
15.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등	48
16. 월별보험료 산정 대상에 노무제공자 추가	53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4일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급가족,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자원봉사자 등을 제외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5인미만 사업장, 자원봉사자)까지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징수를 확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8조의8 및 제48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무급가족종사자’ 정의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무급가족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 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u><신설></u> 3. ~ 7.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무급가족종사자”란 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 7.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면서 ‘무급가족종사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호의2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가입 대상인 무급가족종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¹⁾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227호)

2. 예술인·노무제공자 기준보수 적용 대상 확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를 예술인 등의 보수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준보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나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기준보수) ①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	2.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u>인은 제외한다) 및 노무제공자</u> <u>(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u> <u>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u> <u>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u> <u>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u> <u>외한다)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u> <u>다 적은 경우</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²⁾, 복수의 계약으로 합산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제외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를 해당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보수액)으로 할 수 있음.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위에서 언급한 경우에 한함)의 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을 경우 기준보수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 함.

개정안은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한 모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기준보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으로,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액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해당 예술인 등의 보수에 비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각각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라고 함

즉, 개정안은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 등 저보수 예술인·노무 제공자가 실업 상태에 처했을 때 기준보수를 적용하여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음에 따라 그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기준보수 적용에 따른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 발생 문제와 복수의 계약으로 합산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경우 어느 사업장에 보험료를 추가 부과할지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사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제도 설계 당시부터 단기예술인과 단기노무제공자 등은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4. 재충전급여 지급 기간 동안 보험료 미적용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재충전급여를 지급 받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3조제7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험료) ① (생 략) ② (생 략) ③ ~ ⑥ (생 략) <u><신 설></u>	제13조(보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 <u>제59조의5에 따라 재충전급여를</u> <u>지급받는 경우 수급기간 동안 사</u> <u>업주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u> <u>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6조</u> <u>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u>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재충전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에 보험료 관련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개정 여부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5. 농림어업에 대하여 개산보험료 규정 적용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개산보험료 적용 대상에서 농림어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생 략)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건설업</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 른다.	② ----- <u>건설업,</u> <u>농림어업</u> ----- ----- -----.

나. 검토의견

개산보험료 제도³⁾는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기 전에 예상하거나 추

-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 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 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 액)에 고용보험료를 및 산재보험료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 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 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 ⑥ (생략)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정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사후에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건설업 및 별목업에 대하여 개산보험료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개산보험료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중층적 하도급이 다수 이루어지는 건설업 및 별목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수,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건설업 등에 대하여 예상 보수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한편,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⁴⁾ 농업·임업 및 어업(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나, 본인의 의사에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6. 25.>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2.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의2(농업·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 ① 농업·임업 및 어업(이하 “농림어업”이라 한다) 중 법인이 아닌 자로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이하 “농림어업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본인의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임업·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할 수 있음.

개정안은 개산보험료 제도의 적용 대상에 ‘농림어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농림어업인의 소득은 계절적, 기후적 요인에 따라 불규칙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농림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⁵⁾을 줄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에서는 농림어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므로, ‘농림어업’을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풀어쓰고 이를 다시 ‘농림어업’으로 약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확인되어 매월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농림어업에 1년 단위 부과체계인 개산보험료 제도로 변경·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A(01~03)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 14 –

나. 검토의견

현행법⁶⁾은 사업주로 하여금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정산하기 위한 것임.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용보험법」 개정 여부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7.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추가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② 천재지변 및 경제위기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1. ----- -----고용되거나 노무를 제공하여-----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신설>	② 국가는 천재지변, 경제위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거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5까지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⁷⁾,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재산과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국가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개정안은 ①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② 천재지변, 경제위기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우 국가가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저임금·저소득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줄임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천재지변이나 경제위기 발생 시 근로자 등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여 생계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현행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 따라 제21조가 준용되어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⁸⁾, 현행법으로도 고용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⑧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또한, 경제위기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현행법 제22조의2⁹⁾에 따라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고용노동부는 천재지변 시의 고용보험료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동 사업은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므로 관계부처의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의 경감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8.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유형 확인 청구 시 연체금 징수 제외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주가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어떤 종류의 피보험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청구한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 ③ (생략)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 ----- ----- <u>「고용보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어떠한 종류의 피보험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청구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u>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¹⁰⁾,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보험료와 징수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나, 회생계획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함께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그 사업에 노무·인적 용역 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유형(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업주가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고용보험 가입유형 확인을 청구한 경우 연체금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사업주가 해당 사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유형 확인을 청구한 경우에 보험료 등에 대한 연체금 징수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 개정내용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이므로, 고용보험법 개정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9.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을 삭제하여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하려는 내용임(안 제48조의6제6항 삭제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 ⑤ (생략)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삭제>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⑪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	<삭제>

<u>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 계산서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u> ⑫·⑬ (생략)	⑫·⑬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근로자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사업주의 전액 부담을 규정하는데,¹¹⁾ 산업재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사업주의 책임에 해당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산재보험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볼 것임.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분담하도록 하고,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¹²⁾ 이는 노무제공자의 노무

11)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2)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산재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제공 양태에 비추어 근로자 수준의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한편,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산재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무 부담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데,¹³⁾ 이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보험사무 처리에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것임.

개정안은 노무제공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전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 관련된 보험사무 부담이 당연히 사업주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열악한 사회적·경제적 지위 및 노무제공 조건으로 보험료 부담이 상당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다만,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에 비하여 노무제공 과정에서의 자율성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노무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일률적으로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최근 헌법재판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¹⁴⁾와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분담에

13)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⑩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독립적 노동의 모습(자영인의 징표)과 종속적 노동의 모습(근로자의 징표)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등적 조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¹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성격을 띠고 있어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료를 2분의 1씩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3. 7. 1. 시행 전의 법률)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15)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2헌바139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형식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제공자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계약의 내용이나 노동실태의 측면에서 자영인적 성격을 일부 띠지만, 전형적인 자영인과 달리 어느 정도 인적·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성격 또한 띠다고 할 수 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독립적 노동의 모습(자영인의 징표)과 종속적 노동의 모습(근로자의 징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은 사업주와 그 종사자가 각각 보험료의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다만 사용종속관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

10.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근거가 마련된다는 전제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하며,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8조의8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8(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3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자(이하 이 조에서 “자원봉사자”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210호, 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자원봉

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¹⁶⁾ 보험료 산정,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단체이고, 근로자는 같은 법에 따른 자원봉사자임.¹⁷⁾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등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함.¹⁸⁾

자원봉사자의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210호) 제123조의3(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 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이하 이 조에서 “자원봉사자”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8)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224호) 참조

개정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논의에 부수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48조의8제1항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시 그 산재보험료율을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정하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보험료율 결정이 곤란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7
출판·인쇄·제본업	9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8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7	0. 금융 및 보험업	5
		* 해외파견자: 14/1,000	

고용노동부는 ‘무보수성’을 전제로 하는 자원봉사자의 산재보험 당
연 적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1.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부과 등 관련 사항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근거가 마련된다는 전제에서 노무제공자에 관한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와 유사한 형태(제48조의6)로 산재보험 사무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9(산재보험 예술인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재보험 예술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 예술인의 월별보험료(산재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 예술인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직종의 산재보험 예술인이 부상·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가 발생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해당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예술인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산재보험 예술인의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예술인과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⑦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예술인의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⑧ 산재보험 예술인의 월 보수액 정정 신고 및 산재보험료 정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산재보험 예술인의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산재보험 예술인의 산재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산재보험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 제

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예술인”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본다.

2. 산재보험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6조의2, 제16조의4,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예술인”으로, “산재보험료율”은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로 본다.

3. 산재보험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예술인”으로 본다.

4. 산재보험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제1항·제3항,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예술인”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예술인등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¹⁹⁾ 당연보험가입자(안 제48조의9제1항), 월별보험료의 특례(안 제48조의9제2항), 월 보수액 산정의 특례(안 제48조의9제3항),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안 제48조의9제5항), 보험료 감면의 특례(안 제48조의9제6항),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산재보험료 산정·부과, 산재보험료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독촉, 서류의 송달, 조사 등 보험사무에 관한 준용규정(안 제48조의9제10항) 등을 마련한 것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양태나 노무제공 과정에서의 지위 등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위한 보험사무의 특례 등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임.

개정안은 예술인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논의에 부수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210호) 제91조의24(예술인등)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제3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문화예술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예술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1.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2.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서 사용자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

② 예술인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보험급여의 지급·플랫폼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2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자”는 각각 “예술인등”으로 본다.

한편, 개정안에 ‘산재보험 예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²⁰⁾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예술인 등²¹⁾의 정의 규정이 상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고 볼 것인데 안 제48조의9제6항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감면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시간·장소 등에 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예술인의 특성과 현재 예술인 산재보험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 임의가입 방식으로 적용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술인에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0)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210호) 제91조의24(예술인등)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제3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문화예술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예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1.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2.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서 사용자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

12. ‘중소기업 사업주’를 ‘사업주’로 명칭 변경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관하여 보험사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내용 중 조문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를 일괄하여 ‘사업주’로 변경하려는 내용임(안 제49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제49조(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 ----- -----사업주----- ----- ----- ----- -----.
②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주----- ----- ----- -----.
③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제5항·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사업주----- -----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²²⁾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중소기업사업주등’)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거쳐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²³⁾ 이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영세한 사정에 비추어 중소기업사업주등을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구체적인 범위를 살펴보면,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노무 제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함.²⁴⁾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④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중소기업사업주등의 보험료 산정 등 산재보험 적용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데,²⁵⁾ 동법에서는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하고 있으며, 가입신청 등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음.²⁶⁾

개정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관한 산재보험 적용 관련 특례에 관한 규정 중 조문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를 ‘사업주’로 변경하는데, 이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범위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것임.

다만, 동 개정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규정에 부수하여 보험료의 산정 등 보험사무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 인식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⑧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제5항·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고용노동부는 동 개정규정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전제되는 사항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칭만 변경하는 것은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3.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및 보험료 부과방식 변경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현행 임의가입 방식에서 당연 적용 방식으로 변경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현행 자영업자가 선택한 보수액에서 과세소득총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u>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후단 신설></u>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 ----- ----- ----- <u>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은 제외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삭제></u>

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⑤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⑦ ~ ⑨ (생략)

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

<삭 제>

<삭 제>

⑥ -----

--자기의 과세소득총액(여러 사업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다)-----

--. -----

-----.

⑦ ~ ⑨ (현행과 같음)

<삭 제>

<u>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⑪ <u>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부과·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⑫ <u>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u> 1. <u>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u> 2. 3. (생략)	⑪ -----<u>가입</u>----- ----- -----. ⑫ ----- ----- -----. ----- --. 1. ----- -----<u>제5조</u> <u>제1항·제7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u>----- -----. 2. 3.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²⁷⁾,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고시된 보수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즉, 현행법상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당연적용이 아니라 임의가입 형태이고, 고시된 보수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혜택을 받게 됨.

개정안은 현행법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부동산임대업은 제외)도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하고, 현행 고시된 보수액 중 원하는 수준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해당 자영업자의 과세소득 총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의 사회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⑤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 ⑫ (생략)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실업 상태에 처한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조속히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수는 2023년 기준 47,604명으로, 2020년 30,629명에 비해 55.4% 증가하였으나, 가입자 수가 여전히 적은 등 자영업자의 가입의사가 높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	30,629	36,859	42,643	47,604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수	1,495	2,056	2,575	3,248
실업급여 지급액	7,212	9,932	12,383	16,768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과세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이 자영업자의 월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므로²⁸⁾, 당연 적용의 행정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8)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연 2회 신고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액 일정금액 이하 추계신고자는 소득정보 파악이 제한적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액 일정금액 이하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하고 인건비 등 주요 비용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임.

14.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 특례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농림어업인은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9조의6).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49조의6(농림어업인에 대한 특례) ① 제49조의2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농림어업인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② 농림어업인은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보수액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u> <u>③ 농림어업인이 제2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u> <u>④ 농림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u>

	<u>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u> <u>⑤ 농림어업인은 당해 보험연도에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령²⁹⁾상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농림어업인(농업, 임업 및 어업 경영자)은 자영업자에 포함되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음.

한편, 자영업자가 아니면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음³⁰⁾.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가입 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 ~ 3. (생략)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0)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고시된 보수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개정안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농림어업인의 소득,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농림어업인이 고시된 보수액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그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함께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 개정 여부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은 자영업자에 이미 포함되어 임의가입이 가능하나, 가입률이 저조하며, 농업인 단체가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2.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5.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기준과 6개월 연속 보험료 체납 시 보험관계 소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7).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9조의7(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제49조의2제1항의 자영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인 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영업(해당 자영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도 그 중 한 사업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자영업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자영업자의 배우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인 피보험자가 될 경우, 해당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인 배우자는 해당 자영업 소득의 각 100분의 50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급가족종사자인 배우

자는 공단에 해당 자영업 소득의 100분의 30에서 70까지의 범위 내에서 소득비율을 달리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자영업자는 위 신고 소득비율을 공제한 나머지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 배우자 외의 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인 피보험자가 될 경우에는 제3조의 기준보수를 보수액으로 한다.

④ 무급가족종사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과세소득액에 제49조의 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⑤ 고용보험에 가입한 무급가족종사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

	<u>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⑥ <u>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에 대하여는 제7조제3호,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하고, 보험료의 부과·납부 등은 종사하는 사업이 농업·어업인 경우에는 제49조의6에, 그 밖의 경우에는 제49조의2에 따른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제49조의6(벌칙) (생략)	제49조의8(벌칙) (현행 제49조의6과 같음)
제49조의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6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의9(양벌규정) ----- ----- ----- -----제49조의8----- ----- ----- ----- ----- ----- ----- -----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자영업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고,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규정과 보험료 6개월 연속 체납 시의 보험관계 소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

구체적으로, ①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배우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인 배우자가 해당 자영업 소득의 각각 50%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되, 배우자는 공단에 해당 자영업 소득의 30~70% 범위에서 소득비율을 달리 신고할 수 있고, 이때 자영업자는 배우자의 신고 소득비율을 공제한 나머지를 얻은 것으로 봄. 한편, 배우자 외의 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제3조³¹⁾에 따른 기준보수를 보수액으로 함.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실업급여 보험료로 나뉘고, 개정안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무급가족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신고로 산정된 소득액에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현재 자영업자에게 적용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보수)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 준보수”라 한다)을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나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할 수 있다.

1.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확 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은 제외한다) 및 노무제공자 (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되는 고용보험료율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0.25%이고,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임.

②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무급가족종사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 고용보험료를 6개월 연속 미납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가 소멸되도록 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 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도록 함.

다만, 개정안은 배우자 외의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액으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데, 무급가족종사자는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바, 고용보험료 납부 관련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또한,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고용보험법 개정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가족종사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되며,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이 가능하다는 점, 무급가족종사자의 실제 종사 여부 및 보험료 징수·급여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 53 –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³²⁾, 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는 근로자 및 예술인과 달리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예술인에 비해 노무제공자의 업무 특성상 월별 소득 변동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월평균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현행 근로자, 예술인 외에 노무제공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의 취지 및 개정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산재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문 의 처
02)6788-5538